



보도자료

▶ 인적자원개발과 김태령 사무관

T E L : 6902-8207

E-MAIL : ktr2936@molab.go.kr

F A X : 503-9538

▶ 2009. 8. 5. 배포

▶ 총 2 쪽 (사진없음)

< 본 자료는 <http://www.molab.go.kr>(보도자료)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. >

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도 직업훈련의 길 열린다

- 노동부, 다문화가족 지원정책의 일환으로 8월부터 추진 -

- 국적을 취득하지 못한 결혼이민자도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게 된다.
- 노동부는 8월부터 국제결혼 증가와 함께 주목받고 있는 다문화가족 지원책의 하나로,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에게 실업자 직업훈련을 실시하기로 하였다.
- 현재 결혼이민자는 내국인과 결혼 후 2년 이상 거주를 해야만 국적취득이 가능하고, 고용보험 가입 경력이 없는 외국인인 정부의 직업훈련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.
- 통계청의 인구동향조사에 따르면, 2008년 7월 기준 국내 결혼이민자는 14만4천명에 이르며 다문화가정 자녀수는 5만8천명으로, 다문화가족이 20만명을 넘어섰다.
- 그러나 결혼이민자 중 국적 미취득자는 10만2천여명(전체의 71.1%. 여성이 88.4%차지)으로 정부지원 직업훈련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.

○ 여성가족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취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결혼이민자 중 19.4%만 취업 중이며, 주로 단순노무직에 종사하고 있고 미취업자의 82.2%가 향후 취업의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.

노동부(인적자원개발과장 시민석)는 “이번 조치로 국적 미취득 결혼이민자 10만 여명이 다양한 정부지원 직업훈련을 받을 수 있을 것”이라고 전하며 “결혼이민자들이 직업훈련을 통해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기술 습득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”고 강조했다.

○ 실업자 직업훈련을 받고자 하는 결혼이민자는 가까운 노동부 고용지원센터를 방문하여 훈련상담, 구직등록 등의 절차를 거쳐 본인이 희망하는 훈련과정에 참여하면 된다.

※ 본인이 원하는 직업훈련과정에 관한 각종 정보는 노동부 직업훈련정보망 www.hrd.go.kr을 통해 검색이 가능함

한편, 노동부는 2009년 현재까지 전국 726개 훈련기관에 3,692개의 실업자 훈련과정을 승인하여 실업자의 다양한 직업능력 개발을 지원하고 있고,

○ 올해 3월부터는 실업자 개인이 교육훈련비의 20%를 부담하면 1년간 200만원 범위 내에서 필요한 훈련을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수강할 수 있는 「직업능력개발계좌제」도 시행하고 있다.

※ 실업자훈련 기간은 훈련과정에 따라 1~12개월까지 다양하며, 훈련생에게 월 11만원의 수당(교통비·식비)도 지급함